

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(제6조 관련)

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, 복합도시용지, 산업용지, 과학·연구용지, 신·재생 에너지용지, 환경·생태용지, 관광·레저용지, 농촌도시용지, 배후도시용지 등 중에서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1. 도로·철도·운하·복합형교통수단·수상교통수단, 광장·녹지, 수도·전기·가스·열공급설비, 방송통신시설, 공동구(共同溝)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사방설비, 하천·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)
2. 항만·공항·자동차정류장·공원·유원지·유통업무설비·운동장·문화시설·체육시설·사회복지시설·공공직업훈련시설·청소년수련시설·유수지(遊水池)·화장장·공동묘지·봉안시설·도축장·하수종말처리시설·폐기물처리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·폐차장